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77호 2019. 11. 18(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4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45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52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11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 5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6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6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5호 인천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제7조(협의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클린도시과장, 환경보전과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품부한 사람, 환경단체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 및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보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3. 그 밖에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 한다.

② 위원회에는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직으로 부구청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하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

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4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고 투명한 난연 두건을 통한 안면부 보호와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

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①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을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사용자”를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로 한다.

8.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되, 재화와 용역의 대가를 일정비율 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된 지류형”을 “판매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화폐 사용이”를 “소상공인보호정책상 지역화폐 사용이”로 한다.

4. 시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가맹점

제20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중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혜택플러스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구청장은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지역화폐 혜택플러스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⑦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혜택플러스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제21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수집 · 분석 · 저장”을 “수집·분석·저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접목 · 활용”을 “접목 · 활용”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가맹점”을 “가맹점의 지류형 지역화폐”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캐시백을”을 “인센티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한도”를 “인센티브 제공한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판매대행점과”를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센티브 소멸시효 적용: 적립된 인센티브는 적립일로부터 5년경과시 자동 소멸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맹점”을 “가맹점, 혜택플러스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가맹점”을 “가맹점, 혜택플러스가맹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관련 경품추첨행사 및 경품행사 개최: 경품추첨행사 또는 경품 행사에서 지역화폐 사용자 및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경품 제공 방법: 경품권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나. 경품권 제공기준: 결제금액 5만원당 1매

다. 경품제공 주기: 매년 1회

- 라. 경품의 제공범위: 연간 인센티브 지급액의 1퍼센트 범위내
2. 혜택플러스 가맹점 방문인증에 따른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경품제공방법: 응모참여자에 한해 무작위 추첨
- 나. 경품의 제공기준: 2주에 1회
- 다. 경품제공주기: 가맹점 방문인증 이벤트 응모여부
- 라. 경품의 제공범위: 1회 100명에게 캐시 2만원 지급
3. 혜택플러스 퀴즈이벤트에 따른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경품제공방법: 서로e음 관련 가로세로 퀴즈 정답자에 대한 경품제공
- 나. 경품권제공기준: 퀴즈정답을 모두 맞춘 참여자에 한해 무작위 추첨
- 다. 경품제공주기: 매주 1회
- 라. 경품의 제공범위: 1회 50명에게 캐시 1만원 지급
4. 혜택플러스 가맹점 초성게임에 따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가. 경품제공방법: 혜택플러스 가맹점 맞추기 초성게임 정답자에 대한 경품제공
- 나. 경품권제공기준: 초성게임 참여자 중 정답자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
- 다. 경품제공주기: 매주 1회
- 라. 경품의 제공범위: 1회 50명 캐시1만원 지급
5. 혜택플러스 이용에 따른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경품제공방법: 경품권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 나. 경품권제공기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한 사용자

다. 경품제공주기: 매주 1회

라. 경품의 제공범위: 1회 100명 캐시 1만원 지급

6. 특별 상품관 홍보를 위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경품제공방법: 특별상품관 상품 및 특별상품관에서 소개한 음식점을 다녀온 후기를 개인 SNS에 작성하고 해당 URL을 특별상품관 게시판에 게시한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추천을 통해 경품 제공

나. 경품권제공기준: 참여자에 한해 무작위 추천

다. 경품제공주기: 매주 1회

라. 경품의 제공범위: 1회 30명 캐시 2만원 지급

7.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 지역화폐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가맹점 및 구민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화폐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2. 구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규정, 구매실적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매계획의 이행에 드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①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

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서구지역화폐,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로 징

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선납주차권을 사용하는 방법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1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하면서 운전자가 선납을 희망할 경우(운영시간 종료시까지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하고 출차 시 실제 주차요금으로 정산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2호 중 “한다”를 “하되 주차장별 이용자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비고 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차요금을 서구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5%범위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	차량번호			차종	
	감면항목				
월정기 이용기간			계약금액	원	
환불사유					
환불금액	원 ※ 산출근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p>※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p>	<p>※ 안내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출장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급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를 “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과·소·동”을 “단·실·관·과·소·동”으로,
“항상 비치”를 “비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과·소·동”을 “단·실·관·과·소·동”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2조의 2 제3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과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비보상내역(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원고료 등	비 고
전문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평, 수필, 시, 연재소설, 영어 등 .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1편당 100,000원 .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 1매당 × 10,000원 - 만화, 만평 50,000원 	* 원고료 등은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 투고 및 인터뷰 등 참여자 . 1편당 50,000원 상당 	
명예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당 50,000원 상당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련시설을 사용하는”을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으로,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를 “교육수강료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영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는 그날”을 “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강사)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원창동)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심곡동)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번길 12(가좌동)	2019.8.1. 등록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3(마전동)	

【별지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12,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장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공연장은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2시간 이상은 다음 회 사용료의 10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50%를,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30%를 추가 징수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아	노	1회 공연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무대시설	공	바	1회 1개	10,000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젝트		1회 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 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 공연 1대	10,000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 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를 가산하여 시간당 사용료를 산출함 ※ 봄·가을철(3월~5월, 9월~10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다음해 2월말) ○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냉방(6월~8월) 및 난방(11월~2월말) 해당기간에는 냉·난방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 준비 및 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2. 1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 초과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부속설비(무대시설, 대·소도구 등 시설 내 물품 일체) 사용 중 파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

3. 수영장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강습회원 (월 이용)	개 인	52,000	44,000	38,000	1일 1회만 출입하는 기준금액임
자유회원 (월 이용)	개 인	42,000	33,000	28,000	
1일 이용	개 인	5,000	3,000	2,000	
	단 체	4,000	2,500	1,500	

【 비 고 】

1. 단체란 **동일소속**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 인솔자에 따라 인솔되어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월5,000원,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4. 교육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립어린이집”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구립어린이집”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항 중 “재공고를 실시하되, 두 차례 연장하여 총 세 차례까지만 한다”를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구립어린이집”을 각각 “국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수탁자는 제1항제1호”로, “임면결과를 원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로 한다.

제10조 중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립어린이집”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조례 제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립어린이집”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감독과 선수로 구성하며, 감독과”를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목”을 “종목 “1급 이상 경기 지도자” 중에서, 코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수”를 “코

치, 선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8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9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0조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제11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2조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감독 및”을 “지도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독 및”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를 통하여 서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구체육회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제4조, 제5조 관련)

호	사 업 명	세부내용	비 고
제4조제1항제2호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 정서진·아라뱃길 마라톤대회 ○ 구민화합체육대회 ○ 시민생활체육대회 ○ 서구체육회동호인 한마음 대축전 ○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 	
제4조제1항제9호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누체험 교실 운영 	
제5조제1항제2호	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체육회 운영보조 ○ 서구체육회 차량유지비 지원 ○ 서구체육회 운영물품 구입 지원 ○ 서구체육회 워크숍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수”를 “코치 1명, 선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독은”을 각각 “지도자는”으로, 같은 항 중 “감독에게 부득”을 “지도자가 부득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코치는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3. 경기지도자자격증 1급

② 코치가 운동경기부 임용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2.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3. 경기지도자자격증 2급
4. 최종학력증명서
5. 건강진단서

제5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독은 운동경기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을 “지도자는 운동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감독이”를 “지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감독과”를 “지도자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을 각각 “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코치 - 50세

제16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감독”을 “지도자”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도자 점수 산정 기준표 (제4조제5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비고
올림픽대회	특급			36점	33점	30점	개인 및 단체
아시안게임	특급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21점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3점	11점	8점	6점	4점	
심의위원회 배점	1점 ~ 40점						

1. 지도자 점수는 선수들의(전직이나 현직에서 지도했던 선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 기준표에 의해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의 60퍼센트를 적용한 점수와 심의위원이 배정한 평균 점수를 더한다.
2. 감독 점수산정을 위한 선수들의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3. 감독의 신규임용시 해당년도 연봉은 임용전 최근 1년간 지도했던 선수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한 시 준표를 따른다.
4. 코치의 신규임용시 해당년도 연봉은 선수은퇴 전 1년간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한 기준표를 따른다.

[별표 4]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직책	등급	연봉액		비고
		점수	보수액	
감독	1	500점 이상	60,000	
	2	400점 이상 ~ 500점 미만	58,000	
	3	300점 이상 ~ 400점 미만	56,000	
	4	200점 이상 ~ 300점 미만	53,000	
	5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50,000	
	6	90점 이상 ~ 100점 미만	47,000	
	7	80점 이상 ~ 90점 미만	44,000	
	8	70점 이상 ~ 80점 미만	39,000	
	9	60점 이상 ~ 70점 미만	34,000	
코치	1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50,000	
	2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45,000	
	3	200점 이상 ~ 300점 미만	40,000	
	4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38,000	
	5	90점 이상 ~ 100점 미만	35,000	
선수	1	○ 올림픽대회(4년) 3위 이내, 아시안게임(4년) 1위 입상 ○ 배점 합계 700점 이상	60,000	
	2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아시안게임 2, 3위 입상 ○ 배점 합계 600점 이상	58,000~ 56,000	
	3	○ 세계선수권대회 2, 3위,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전국체육대회 개인 1위 입상 ○ 배점 합계 500점 이상	56,000~ 54,000	
	4	○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 배점 합계 400점 이상	54,000~ 48,000	
	5	○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 ○ 국가대표 선발 ○ 배점 합계 300점 이상	48,000~ 44,000	
	6	○ 배점 합계 200점 이상	4,400~ 4,000	
	7	○ 배점 합계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40,000~ 30,000	
	8	○ 배점 합계 40점 이상 ~ 100점 미만	30,000~ 26,000	
	9	○ 배점 합계 40점 이하	24,000	

1. 별표 1과 2에 의한 점수 적용

2. 감독 9등급 미만, 코치 5등급 미만, 선수 9등급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2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97호(2018.7.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소로1-311호선, 사업명: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용지조서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20-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
- 명칭: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m ²)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216
변경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22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없음	마전동	312-1	도	45	45	임인*	인천 서구 마전동**				
2	기정	"	산17-5	임	444	9	배양*	인천 서구 서달로 **				
	변경	"	159-6	임	10	10	배양*	인천 서구 서달로 **				
3	기정	"	산16-1	임	20,270	560	총도 김씨*	인천 서구 마전동**				
	변경	"	159-4	임	379	379	총도 김씨*	인천 서구 마전동**				
4	기정	"	산16-3	도	902	881	김원*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광*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원*	고양군 중면 일산리 ****				
	변경	"	159-5	도	937	937	김원*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광*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원*	고양군 중면 일산리 ****				
5	기정	"	727	도	329	175	국	국토교통부				
	변경	"	727-4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727-5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6	기정	"	290-17	도	2,983	3	공	인천광역시				
	변경	"	290-19	도	3	3	공	인천광역시				
7	기정	"	416-34	구	89	5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416-40	구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8	기정	"	313-1	도	54	52	박성*	김포 검단면 불로리**				
	변경	"	313-3	도	52	52	박성*	김포 검단면 불로리**				
9	변경없음	"	312-3	도	27	27	공	인천광역시				
10	변경없음	"	321-18	도	30	30	임종*	인천 서구 마전리**				
11	변경없음	"	321-3	도	82	82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은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기정	마전동	321-2	도	83	5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변경	"	321-29	도	5	5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정	대곡동	산199-9	임	8,833	340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인천산림보합	남동구 남촌로**	근저당권	
									인천산림보합	남동구 남촌로**	지상권	
	변경	"	720-16	임	353	353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인천산림보합	남동구 남촌로**	근저당권	
									인천산림보합	남동구 남촌로**	지상권	
2	기정	"	720-7	도	62	54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	720-13	도	54	54	공	인천광역시 서구				
-	기정	"	-	-	-	-	-	-				
	변경	"	720-10	도	1	1	임병*	인천 서구 마전리				신규
3	기정	"	729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변경	"	729-1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4	변경없음	"	719-3	도	136	136	공	인천광역시 서구				
5	기정	"	720-6	도	23	16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	720-12	도	13	13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기정	"	산199-8	임	26,761	69	윤태*	부평구 부평동***				
	변경	"	720-15	임	63	63	윤태*	부평구 부평동***				
			720-14	임	10	10	윤태*	부평구 부평동***				
7	기정	"	720-5	대	340	8	윤태*	부평구 부평동***				
	변경	"	720-11	대	9	9	윤태*	부평구 부평동***				
8	기정	"	713-1	도	1,070	891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713-13	도	923	923	국	농림축산식품부				
9	기정	"	686-5	대	469	22	신묘*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	686-35	대	21	21	신묘*	인천 서구 대곡동 **				
10	기정	"	686-7	대	269	14	유일*	인천 서구 대곡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변경	"	686-36	대	14	14	유일*	인천 서구 대곡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11	기정	"	713	도	97	6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713-10	도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기정	"	709	구	1,623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709-9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기정	"	700-2	도	17,088	596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700-8	도	598	598	국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기정	대곡동	719-2	잡	454	3	송하*	서울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근저당 권	
	변경	“	719-15	잡	1	1	송하*	서울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근저당 권	
		“	719-14	잡	2	2	송하*	서울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근저당 권	
15	기정	“	718-3	도	116	77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	718-4	도	75	75	공	인천광역시 서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점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 없음	대곡동	719-2	창고	블록조	11.2㎡	창고	송하준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2	기정	마전동	산16-3	한전주	블로지 8628A 004	1주		한전 인천 지역 본부					
	변경	"	159-5	한전주	블로지 8628A 004	1주							
3	기정	대곡동	산199-9	한전주	태정지 1G1	1주							보조
	변경	"	720-16	한전주	태정지 1G1	1주							
4	기정	대곡동	713-1	한전주	태정지 8628A 213	1주							
	변경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3	1주							
5	기정	대곡동	713-1	한전주	태정지 8628A 214	1주							
	변경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4	1주							
6	기정	대곡동	713-1	한전주	태정지 8628A 321	1주							
	변경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321	1주							
7	기정	대곡동	700-2	한전주	태정지 8628A 331	1주							
	변경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1	1주							
8	기정	대곡동	700-2	한전주	태정지 8628A 334	1주							
	변경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4	1주							
9	기정	대곡동	700-2	한전주	태정지 8628A 241	1주							
	변경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241	1주							
10	기정	대곡동	713-1	채신주	태정간 8M 우2	1주		KT					
	변경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2	1주							
11	기정	대곡동	713-1	채신주	태정간 8M 우3	1주							
	변경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3	1주							
12	기정	대곡동	713-1	채신주	F208R151 1-4	1주							
	변경	대곡동	713-13	채신주	F208R151 1-4	1주							
13	기정	대곡동	700-2	채신주	06-11 F-14-20	1주							
	변경	대곡동	700-8	채신주	06-11 F-14-20	1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기정	대곡동	700-2	채신주	태정지3 8628A 331	1주		SK 텔레콤				
	변경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3 8628A 331	1주						
15	기정	대곡동	700-2	채신주	C5011 2801 -2850	1주		KT				
	변경	대곡동	700-8	채신주	C5011 2801 -2850	1주						
16	기정	대곡동	700-2	채신주	태정지 8628A 241	1주		SK 텔레콤				
	변경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 8628A 241	1주						
17	기정	대곡공	713-1	CCTV	742	1주		인천 서구청				
	변경	대곡동	713-13	CCTV	742	1주						
18	기정	대곡공	713-1	CCTV	-	1주		미상				
	변경	대곡동	713-13	CCTV	-	1주						
19	기정	대곡동	700-2	CCTV	743	1주		인천 서구청				
	변경	대곡동	700-8	CCTV	743	1주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석남동 199-62번지 외 10필지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김대중, (주)선교종합건설 (대표 김익중)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62번지 외 10필지
 - 나. 대지면적 : 1,276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5,492.05m² (지하 2층, 지상 16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 마. 사 업 비 : 9,424,816천원
4. 사업기간 : 2019. 12. 13. ~ 2021. 11. 12.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가현로 84 외 7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1.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11-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5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 84 (마전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6-1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460 (청라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랑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17번길 42-1 (마전동)	20081231	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48-6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78번안길 45 (당하동)	20081231	고산후로78번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원당경로당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2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45번길 30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달드로76번길 7-13 (청라동)	20120330	청라에메달드로의 시작점에서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2-2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23-9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66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18 (가좌동)	20170703	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9 - 2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
다.

2019. 11.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원창동 381-35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북항배후부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2,092,933.2	-	2,092,933.2	인고 제2006-237호 (2006.12.18.)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43	17,854	393,018.4	10	6,115	180,769.7	31	11,079	190,170.7	2	660	22,078.0
광로	1	487	19,955.8	-	-	-	-	-	-	1	487	19,955.8
대로	8	5,292	180,391.5	4	3,101	113,094.9	4	2,191	67,296.6	-	-	-
중로	30	11,508	187,906.1	5	2,901	66,541.8	24	8,434	119,242.1	1	173	2,122.2
소로	4	567	4,765.0	1	113	1,133.0	3	454	3,632.0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광로	3	3	40 (40-46)	주간선도로	1,761 (487)	원창동 대1-16	원창동 대1-17	일반도로	-	인고158 (’06.9.11)	()는 구역내
	대로	1	7	35 (35-41)	보조간선도로	3,100 (574)	광1-14	대1-17	일반도로	-	인고1386 (1988.9.23)	()는 구역내
	대로	1	14	30~36	보조간선도로	14,700 (989)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도로	-	인고13 (’05.1.25)	()는 구역내
	대로	1	16	35 (35-41)	주간선도로	1,528 (984)	광2-4	대 3-92	일반도로	-	건고 54 (70.2.9)	()는 구역내
	대로	1	17	35 (35-40)	주간선도로	2,307 (554)	원창동 395	원창동 광3-3	일반도로	-	인고 158 (06.9.11)	()는 구역내
	대로	2	29	30 (30-34)	보조간선 도로	4,250 (267)	대2-32	대1-14 (하수처리장)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2	37	30	국지도로	1,085 (764)	대1-17	원창동 395-7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2	40	30 (30-36)	국지도로	850 (558)	원창동 대1-17	대1-7(올도)	일반도로	-		()는 구역내
	대로	2	116	30	국지도로	602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 2016-290 (2016.11.21)	
	중로	1	1	20	집산도로	803	대1-7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2	20	집산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3	20	집산도로	578	광3-3	대1-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4	20	집산도로	970	대1-7	대2-40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1	5	20	국지도로	550	대1-14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4-50 (2014.03.10.)	
	중로	2	1	15	국지도로	219	대1-16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62	대1-14	중2-8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3	15	국지도로	265	대1-14	중2-4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4	15	국지도로	311	중2-7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5	15	국지도로	167	중2-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3	중2-7	중2-5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7	15	집산도로	442	대1-14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8	15	국지도로	262	대1-7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9	15	국지도로	197	중2-2	중2-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11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12	15	국지도로	550	광3-3	대2-37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중로	2	900	15	국지도로	266	대1-14	중2-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중로	2	901	15	집산도로	225	대1-16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중로	2	902	15	국지도로	172	중2-1	중2-90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중로	2	910	15	국지도로	455	대2-29	중2-920	일반도로	-	인고 2016-290 (2016.11.21)	
	중로	2	918	15	국지도로	350	대2-40	중1-4	일반도로	-	인고 2014-169 (2014.07.28.)	
	중로	2	919	15	국지도로	353	대2-40	중1-4	일반도로	-	인고 2014-169 (2014.07.28.)	
	중로	2	920	15 (15~20)	국지도로	232	중1-1	석남동 342-13	일반도로	-	인고 2016-123 (2016.06.07)	
	중로	2	928	15	국지도로	600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29	15	국지도로	283	대2-116	중2-928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0	15	국지도로	272	대2-116	중2-928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1	15	국지도로	124	구역경계	대2-116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2	15	국지도로	130	구역경계	대2-116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2	933	15	국지도로	124	중2-5	중2-2	일반도로	-	인고 2017-240 (2017.10.16.)	
	중로	3	1	12	국지도로	173	중2-7	중2-3	일반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소로	1	1	10	특수도로	113	광2-4	중2-2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소로	2	1	8	국지도로	291	중2-901	중2-90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소로	2	2	8	국지도로	82	중2-901	소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소로	2	3	8	국지도로	81	중2-901	소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4-9 (2014.01.13.)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주차장	원창동 381-1번지 일원	5,642	인고 2012-5 (2012.01.16.)	
	2	주차장	원창동 381-2번지 일원	1,300	인고 2012-5 (2012.01.16.)	
	3	주차장	원창동 381-3번지 일원	782	인고2016-6 (2016.01.18.)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제1공원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14,210.8	인고 2012-5 (2012.01.16.)	
	2	제2공원	근린공원	원창동 392번지 일원	76,368.2	인고 2012-5 (2012.01.16.)	
	3	제3공원	소공원	원창동 381-4번지 일원	469	인고2016-6 (2016.01.18.)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	녹지	완충녹지	석남동 642-4번지 일원	22,954.6	인고 2012-5 (2012.01.16.)	
	2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1-1번지 일원	1,210.6	인고 2012-5 (2012.01.16.)	
	3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79-1번지 일원	9,741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659㎡)
	4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8번지 일원	16,912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7,727㎡)
	5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92번지 일원	16,109	인고 2012-5 (2012.01.16.)	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1,857㎡)
	7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1-3번지 일원	1,922	인고2016-6 (2016.01.18.)	
	1	녹지	경관녹지	석남동 642-75번지 일원	6,905.6	인고2016-290 (2016.11.21.)	
	2	녹지	경관녹지	석남동 642-76번지 일원	3,833	인고2016-290 (2016.11.21.)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원창동 196-7번지 일원	441,514 (25,428)	인고 122 (99.9.30)	()구역내 면적, 녹지 3,45와 중복결정 (10,243㎡)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원창동 379번지 일원	141,246.7	인고 제95-6호 (95.01.12.)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1번지 일원	3,443.1	인고2012-5 (2012.01.16.)	
	2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123번지	3,445.9	-	소방서
	3	공공청사	공공청사	원창동 381-125번지	1,756.3	-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1	사회복지시설	원창동 381-124번지	1,755.2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있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있음)

■ 공업용지(변경있음)

[변경 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28획지 37필지	895,388.3	
I	I -1(1)	61,684.4	1	17,293.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21,771.1	
			3	22,619.9	
	I -1(2)	23,041.1	1	11,393.9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1,647.2	
	I -1(3)	54,590.5	1	12,502.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02.0	
			3	15,034.0	
			4	14,552.1	
	I -1(4)	52,822.2	1	12,581.7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81.3	
			3	14,073.9	
			4	13,585.3	
	I -1(5)	50,386.8	1	12,502.1	
			2	12,501.7	
			3	12,932.4	
			4	12,450.6	
	I -1(6)	24,267.5	1	12,005.9	
			2	12,261.6	
	I -1(7)	25,187.6	1	12,466.6	
			2	12,721.0	
I -2(1)	51,290.4	1	14,048.0		
		2	16,891.1		
		3	20,351.3		
I -2(2)	93,933.2	1	18,017.2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8,936.8		
		3	8,899.6		
		4	18,520.8		
		5	13,200.5		
		6	12,937.4		
I -2(3)	41,735.0	1	14,383.5		
		2	13,620.7		
		3	13,73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획지	필지	비고
				면적(m ²)		
I	I-3	21,846.8	1	3,360.8		
			2	3,360.8		
			3	3,360.8		
			4	3,387.2		
			5	3,387.2		
			6	4,990.0		
	I-4	31,793.0	1	3,992.1	-	-
			2	3,975.1	-	-
			3	3,963.8	-	-
			4	3,969.3	-	-
			5	3,983.6	-	-
			6	3,976.7	-	-
			7	3,964.1	-	-
			8	3,968.3	-	-
	I-5	27,133.1	1	6,777.7	-	-
			2	6,798.1	-	-
			3	6,770.3	-	-
			4	6,787.0	-	-
	I-7	79,177.9	1	59,913.7	-	-
			2	-	19,264.2	주1,3) 필지 분할 가능
	I-8	62,946	1	62,946	-	-
	I-9	15,961	1	1,438	-	-
			2	1,416	-	-
			3	1,395	-	-
			4	1,373	-	-
			5	1,352	-	-
			6	1,331	-	-
			7	1,309	-	-
			8	1,288	-	-
			9	1,266	-	-
			10	1,245	-	-
			11	1,223	-	-
12			1,325	-	-	
I-9	32,915.2	구체적인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의 결과에 따름			북향목재단지	
I-10	22,989.5					
I-11	19,582.7					
I-12	12,454.0					
I-13	5,391.7					
I-14(1)	56,460.3	1	-	56,460.3	주2,3) 필지 분할 가능	
I-14(2)	27,798.4	2	-	27,798.4		

- 북향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규모 (신설)2,400㎡(주1) 이상
 - 주1) I-7-2 필지는 분할조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I-1(1)~1(7), I-2(1)~2(3), II-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3)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필지분할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목재단지 단서조항

구 분	최소 획지규모	비 고
공업용지 (I -9, I -10)	2,4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공업용지 (I -11, I -12, I -13)	1,6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주2) 무분별한 필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분할요건 : 최소획지규모 이상, 세장비 1:1~2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 형태, 1면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제외)에 모두 만족할 경우

주3) 필지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할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합병만 허용함

○ I -1(1)~1(7), I -2(1)~2(3), I -7-2, I -14(1), I -14(2)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변경 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31획지 37필지	895,388.3	
I	I -1(1)	61,684.4	1	17,293.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21,771.1	
			3	22,619.9	
	I -1(2)	23,041.1	1	11,393.9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1,647.2	
	I -1(3)	54,590.5	1	12,502.4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02.0	
			3	15,034.0	
			4	14,552.1	
	I -1(4)	52,822.2	1	12,581.7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2,581.3	
			3	14,073.9	
			4	13,585.3	
	I -1(5)	50,386.8	1	12,502.1	
			2	12,501.7	
			3	12,932.4	
			4	12,450.6	
	I -1(6)	24,267.5	1	12,005.9	
			2	12,261.6	
	I -1(7)	25,187.6	1	12,466.6	
			2	12,721.0	
I -2(1)	51,290.4	1	14,048.0	필지 주2,3) 분할 가능	
		2	16,891.1		
		3	20,351.3		
I -2(2)	93,933.2	1	18,017.2		
		2	8,936.8		
		3	8,899.6		
		4	18,520.8		
		5	13,200.5		
		6	12,937.4		
		7	13,420.9		
I -2(3)	41,735.0	1	14,383.5		
		2	13,620.7		
		3	13,730.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획지	필지	비 고
				면적(m ²)		
I	I-3	21,846.8	1	3,360.8		
			2	3,360.8		
			3	3,360.8		
			4	3,387.2		
			5	3,387.2		
			6	4,990.0		
	I-4	31,793.0	1	3,992.1	-	-
			2	3,975.1	-	-
			3	3,963.8	-	-
			4	3,969.3	-	-
			5	3,983.6	-	-
			6	3,976.7	-	-
			7	3,964.1	-	-
			8	3,968.3	-	-
	I-5	27,133.1	1-1	3,388.85	-	-
			1-2	3,388.85	-	-
			2-1	3,399.05	-	-
			2-2	3,399.05	-	-
			3	6,770.3	-	-
			4-1	3,393.50	-	-
	I-7	79,177.9	1	59,913.7	-	-
			2	-	19,264.2	주1,3) 필지 분할 가능
	I-8	62,946	1	62,946	-	-
	I-9	15,961	1	1,438	-	-
			2	1,416	-	-
			3	1,395	-	-
			4	1,373	-	-
			5	1,352	-	-
			6	1,331	-	-
			7	1,309	-	-
			8	1,288	-	-
			9	1,266	-	-
10			1,245	-	-	
11			1,223	-	-	
12			1,325	-	-	
I-9	32,915.2	구체적인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의 결과에 따름			북항목재단지	
I-10	22,989.5					
I-11	19,582.7					
I-12	12,454.0					
I-13	5,391.7					
I-14(1)	56,460.3					1
I-14(2)	27,798.4	2	-	27,798.4		

-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규모 (신설)2,400m²(주1) 이상
- 주1) I-7-2 필지는 분할조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2) I-1(1)~1(7), I-2(1)~2(3), II-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
- 주3)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필지분할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목재단지 단서조항

구 분	최소 획지규모	비 고
공업용지 (I-9, I-10)	2,4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공업용지 (I-11, I-12, I-13)	1,6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 주2) 무분별한 필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분할요건 : 최소획지규모 이상, 세장비 1:1~2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 형태, 1면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제외)에 모두 만족할 경우
- 주3) 필지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할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합병만 허용함

○ I-1(1)~1(7), I-2(1)~2(3), I-7-2, I-14(1), I-14(2)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I-5	1,2,4 →1-1,1-2,2-1,2-2,4-1,4-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22필지	104,833.7	
II	II-1	16,595.7	1	16,59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II-2	16,323.8	1	4,165.7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4,142.4	
			3	1,082.8	
			4	6,932.9	
	II-3	71,914.2	1	6,100.1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6,292.1	
			3	9,531.8	
			4	9,559.3	
			5	3,379.2	
			6	1,534.7	
			7	91.3	
			8	1,515.0	
			9	2,850.8	
			10	4,457.0	
			11	456.0	
			12	3,046.0	
13			6,612.0		
14	2.7				
15	8,079.9				
16	3,506.2				
17	4,900.1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II-1~3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단변과 장변의 비(1:1~3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 분할 가능(단, 소규모 필지를 3,500m ² 이상으로 합병하기 위한 분할은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m ²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소규모(3,500m²이하) 필지: 원창동 388-6, 388-8, 388-9, 395-9, 395-1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6필지	99,497.0	
II	II-4	99,497	1	16,563	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 3,500m ²
			2	16,626	
			3	16,579	
			4	16,584	
			5	16,572	
			6	16,573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II-4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m ²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필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6필지	97,839.3	
II	II-5	97,839.3	1	16,633.5	필지 분할 가능
			2	16,521.5	
			3	16,568.8	
			4	15,976.7	
			5	16,029.1	
			6	16,109.7	

- 주1)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분할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 결정된 필지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II-5가구 필지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규모	최소필지규모 3,500m ²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54획지	147,500.2	
III	III-1	8,390.7	1	2,028.9	
			2	2,151.2	
			3	2,048.9	
			4	2,161.7	
	III-2	11,907.5	1	1,485.9	
			2	1,551.6	
			3	1,726.4	
			4	1,786.0	
			5	1,232.6	
			6	1,255.0	
			7	1,419.0	
			8	1,451.0	
	III-3	13,843.6	1	1,819.5	
			2	1,817.1	
			3	2,099.5	
			4	2,027.1	
			5	1,462.5	
			6	1,353.9	
			7	1,713.0	
			8	1,551.0	
	III-4	13,991	1	1,380	
			2	1,379	
			3	1,404	
			4	1,391	
			5	1,417	
			6	1,391	
			7	1,430	
			8	1,391	
			9	1,426	
			10	1,382	
	III-5	13,281	1	1,501	
			2	1,471	
			3	1,525	
			4	1,455	
			5	1,525	
			6	1,406	
			7	1,525	
			8	1,357	
			9	1,516	
	III-6	8,534	1	2,000	
			2	2,077	
			3	2,196	
			4	2,261	
	III-7	67,030.5	1	10,964.0	
			2	11,738.0	
			3	15,367.5	
			5	7,171.0	
			6	7,121.0	
7			6,956.0		
8			7,713.0		
1			2,556.2		
III-8	10,521.9	2	2,769.0		
		3	2,541.0		
		4	2,655.7		

■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2획지	1,837	
IV	IV-1	1,837	1	1,137	
			2	700	

■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4획지	10,400.5	
V	1	10,400.5	381-39	3,443.1	
			381-123	3,445.9	
			381-125	1,756.3	
			381-124	1,755.2	

□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3획지	7,724	
V	2	5,642	1	5,642	
V	3	1,300	1	1,300	
V	5	782	1	782	

□ 유통 및 공급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1획지	98,340	
V	4	98,340	1	98,340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141,246.7m²) 결정면적과 획지 면적차이는 송유관로(42,906.7m²) 면적에 의한 차이임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계	계		35획지	7,947	
VII	VII-1	1,124	1	218	
			2	224	
			3	226	
			4	226	
			5	230	
	VII-2	2,289	1	230	
			2	230	
			3	230	
			4	230	
			5	226	
			6	223	
			7	230	
			8	230	
			9	230	
			10	230	
	VII-3	2,277	1	229	
			2	229	
			3	229	
			4	229	
			5	224	
			6	221	
			7	229	
			8	229	
			9	229	
			10	229	
	VII-4	2,257	1	227	
			2	227	
			3	227	
			4	227	
			5	222	
			6	219	
			7	227	
			8	227	
			9	227	
			10	227	

※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동일한 전면도로에 인접한 필지에 한하여 허용함.
 원칙적으로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합병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분할만 허용함.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	I-1(1)~1(7), 2(1)~2(3)	용 도	허 용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3m(대1-7, 대2-40, 대2-116, 중1-4, 중2-928, 중2-929, 중2-930, 중2-931, 중2-932호변)	
	I-3, 4, 5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3m	
	I-7, 8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대로1-7호선변 : 6m 도시계획도로변 : 3m(I-7-2만 적용) ○ I-8블럭 : 3m, 북측변 20m	
	I-9	용 도	허 용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	I-9-13 (목재단지)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주1)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건축한계선내 : 공공조경 3m ○교차로가각부 : 공개공지 5m 	
		I-14(1),14(2)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변 : 3m(단, 대2-29호선변 : 6m)		

- 주1) 공장·창고용도에 한하여 70% 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I	II- 1, 2, 3, 4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금융업소, 자동차영업소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건축한계선	○2m, 광로3-3호변 : 5m		
	II-5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창고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 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2m, 광로3-3호변 : 5m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II	III- 1~6, 8	용 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형 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3m, 대로1-7호변: 6m ○ 공공보행통로: 동서측 3m, 남북측 5m, R=12.5m	
	III- 7	용 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형 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	
건축한계선		○ 중봉로변 : 공공조경 6m, 건축한계선 15m ○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 대로1-7호변 : 건축한계선 6m ○ 중로2-1호변 : 건축한계선 3m			

■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IV	IV-1	용 도	허 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건축한계선		○ 3m	

■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	V-1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형 태	○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을 설치할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	V-2, 3, 5 (주차장)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차장(단,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형 태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을 설치할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	V-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형 태	○담장은 1.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을 설치할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북측 청라경계부 건축한계선 : 20m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VII	VII-K,M 1~4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단, 획지당 1세대에 한하여 지하층 및 1층 외에 입지하는 경우만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불 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건축한계선		○ 도시계획도로변 : 전면공지 1m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대로1-7호변: 6m ○ 공공보행통로: 동서측 3m, 남북측 5m, R=12.5m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9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제7조(협의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클린도시과장, 환경보전과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품부한 사람, 환경단체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